

■ 업무내용

주택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Ex)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

■ 등록기준

1. 자본금

| 법인 | 개인 |
|--------|--------|
| 3억원 이상 | 6억원 이상 |

※[건설산업기본법]에 의한 건축공사업, 토목공사업,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등록기준 자본금, 기술인력 중복인정

2. 기술능력

| 기술자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인 - 토목분야기술자 또는 학.경력자(초급이상) |

※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3. 시설·장비

| 사무실 |
|--|
| 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등록을 하려는 시·도 안에 있어야 한다. |
| 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|

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15~20일 이내 소요